
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후속조치 및 핵심산업육성계획

2006. 4. 3

제 주 도

목 차

I . 후속조치 기본방향	1
II . 추진계획	3
1. 특별법 후속 입법 추진	3
①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 제정 추진	
2. 자치역량의 강화	4
① 조직·인사 체계의 혁신 추진	
② 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설정	
③ 자체감사 강화 계획 수립·추진	
④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	
⑤ 도민자치역량 강화	
⑥ 교육 훈련의 전문성 강화	

3. 신설제도의 효율적 운영 12

- 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
- ② 자치경찰제 시행
- ③ 특별행정기관 통합 운영
- ④ 사회협약 제도의 시행
- ⑤ 공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
- ⑥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

4. 핵심산업 추진 20

- ① 제주도 전 지역 국제회의도시 지정
- ② 제주 특성을 살린 관광제도 마련
- ③ 청정 1차 산업 육성
- ④ 제주 연안 및 산지의 효율적·자주적 관리
- ⑤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
- ⑥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
- ⑦ 첨단산업 육성 추진

5. 국제자유도시 개발여건 조성 27

- ① 투자유치 기본환경 조성
- ② 토지이용체계의 개선
- ③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·관리
- ④ 친환경적 생태도시 구축체계 확립
- ⑤ 환경관리제도 강화 추진
- ⑥ 도로관리 종합체계 구축
- ⑦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방안 마련
- ⑧ 제주형 보건복지 기준 설정
- ⑨ 교통관리체계 정비

6. 2단계 추진체계 구축 37

- ① 규제자유지역화 추진
- ② 2단계 제도개선 등 연구(용역) 추진

7. 특별법 홍보 및 도민공감대 형성 40

I. 후속조치 기본방향

-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제주 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 -

- ▶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제주의 차별화를 실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대표 자치단체로 육성 → 또 하나의 작은 한국 실현
- ▶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

① 『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』 실시계획 구체화

- 제주미래 비전과 도민의 염원을 담고 있는 『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』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로드맵 작성

②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

- 출범전과 출범후(‘06년말), 2단계 제도개선 등 각 단계별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행

③ 도민 공감대 형성

- 특별법 후속조치 과정(도조례 제정 등) 및 2단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
- 시민참여 확대 및 거버넌스(협치) 체제 구축

④ 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

- 교육훈련 및 국내외 기관간 인사교류를 통한 공무원 정책능력 강화 ⇒ 국제적 자질의 공무원 능력 배양
- 행정의 투명성 제고
- 도민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운영(도민참여·교육다양화)

⑤ 국제자유도시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구축

-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 - 중앙설득 논리 개발
 - 규제완화 및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제도 발굴
- 중장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실천전략 마련

II. 추진계획

1. 특별법 후속 입법 추진

①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 제정 추진

- '06. 7. 1 제주특별자치도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하여 특별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 조기 제정 추진

특별법에 의한 조례 제정 건수 : 98건

- 단계별·기관별 분류

계	제주도제정	교육청 제정	도의회 제정	경찰청 협의	장기과제
98	79	5	2	3	9

추진 상황

- 제정대상 총 98건의 조례 하반기에 제정할 9건을 제외한 89건의 조례작성 및 입법예고
 - '05년말 이후 실·국별로 조례 초안 작성 → 합동 연찬 추진
 - 입법예고 : 85건('06. 3. 11 현재)
-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
 - 읍·면·동별 설명회 개최
 - 주요 조례에 대한 실·국별 공청회 개최, 전문가 토론 등 추진

추진 계획

- 단계별 조례 입법예고 및 제정 추진
 - 특별자치도 출범관련 주요 조례 : '06년 상반기내 제정 추진
 - 제주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 등이 필요한 조례 : '06년 7월 이후 제정 추진

2. 자치역량의 강화

① 조직·인사 체계의 혁신 추진

- 행정조직의 혁신 및 공무원의 정책능력 향상이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는 인식하에
-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차별화된 성과-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제주형 인력관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

특별법 주요내용

-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(법 14조, 49~52조)
 - 행정조직의 설치 및 정원 책정 등 자율성 부여
 - 직군·직렬의 통합 및 신설권 부여
- 인력 관리에 대한 특례(법 49~52조, 53~65조)
 - 인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강화
 - 성과관리 계약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
 - 성과주의 보수체계 강화 및 적격심사제 도입
 - 개방형 직위의 확대 및 우수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 - 교육훈련 강화 및 인사교류 확대

추진계획

< 1단계('06. 7. 1 이전) > : 단기 과제의 실현

-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조직체계의 정비
 - 특별자치도, 행정시, 읍·면·동 조직 및 기능 재조정
 - 행정시장의 임명 등 신설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
 - 기타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 제도 정비 추진

○ 조직·인력 관리 혁신을 위한 연구 추진

- '06년 상반기, 차별화된 제주형 조직·인력 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- 주요 연구과제
 - 중·장기적 관점의 특별자치도 인력 수급(需給) 계획 마련
 - ▶ 연구결과에 따라 '06년 하반기 중 공무원 정수 운영 기본방향을 확정·고시함으로써 공무원 수 증가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정부담 억제
 - 산업정책과 연계한 직군·직렬의 통합 및 신설 등 조정 방안
 - 성과 계약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 제도 도입 방안
 -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류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
 - 기타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임용제도의 개선 등

< 2단계(출범 이후) > : 중기 과제의 실현

- 1단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형 인력관리 제도 시행

- 특별자치도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관리 프로그램이 지역발전의 핵심 역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·발전 추진
- 분야별 보직관리 제도 도입을 활용한 전문가 그룹 양성

② 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설정

- 교부세 법정률 지원과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를 통해서 보조금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지원될 예정
 - ▶ 따라서 향후 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은 대 중앙 절충 추진과 함께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
-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중·장기적 건전 재정 운영방안 마련 필요

기본 방향

-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 수요 및 세입 예측 추진
- 세입 규모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
- 제주 비전과 연계한 세출의 우선 순위 결정 시스템 구축

추진계획

- 국세 일부의 자치도 이양 방안 마련 추진
 - 2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 추진
 - 특히 자치도 성과 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연계하여 국세를 이양받는 방안 마련
- 특별자치 재정 운영 기본계획 수립 추진
 - '06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 추진
 - 효율적 예산 배분 시스템 구축 연구
 - * 사업비/경상비 비율, SOC 투자 예산 설정, 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 확정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등
 - 기타 제도 개선에 의한 세입확대 방안 마련
- '06년 하반기, 「특별자치도 재정운영 기본계획」 확정 시행

3] 자체감사 강화계획 수립 추진

- 중앙권한의 획기적 이양 및 독립적 성격의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종전 감사체계의 혁신 및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감사필요
 - ▶ 특히 도 단일 광역체제 개편과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감사 운영체계 개선 필요
-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수용하여 정책감사 확대, 자체감사 기능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감사 강화방안 마련

특별법 주요내용

- 감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 등(법 66조)
 - 도지사 소속하에 독립된 직위를 갖는 감사위원회 설치
 -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(3인은 도의회 추천,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)
 - 위원회는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도 수행
- 국회 및 감사원 감사를 제외한 중앙부처 감사 배제(법 71조)

추진계획

- 자치감사 체계의 정비
 - '06년 상반기 중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, 교육행정 공무원의 사무국 배치 등에 관한 제도 정비
- 자치감사 강화 계획 수립 ('06년 상반기)
 - 감사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 방안
 - 감사 결과의 환류를 통한 정책능력의 향상 방안 마련 등

4]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

-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특별자치도 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의 조화 도모

특별법 주요내용

- 의원 정수의 확대 : 19명 → 41명(도의원 36 + 교육의원 5명)
-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및 회기 운영 자율화
-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강화
 - 전문위원, 별정·기능직 공무원 →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 임명
- 상임위원회별 3명 이내의 정책자문위원 임명 → 정책 기능 보좌

추진 계획

- 관련 조례 제정('06년 상반기)
 - 조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간 역할 분담
- < 의회 제정 >
 -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
 - 제주특별자치도의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
- < 집행부 발의 >
 -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조례
 - 의회 사무기구 조직·정원 관련 조례 등
-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의회 정책심의 역량 강화 방안 마련
 - 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 및 사무처의 기능 강화를 위한 도의회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

5] 도민 자치역량 강화

-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도민의식제고·능력향상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
- 행정주도형이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책반영

추진방침

-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주민 자율 결정 및 편성
- 도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도민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개발·운영

추진 계획

- 주민 참여 및 토론형 프로그램 발굴 추진
⇒ 프로그램공모 및 실질적 수혜프로그램 개발
- 국제적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

<도민역량 강화방안 추진>

-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 연구(3월~6월)
 - 지역현안 및 각종시책에 대한 토론문화 정착
- 시민단체 주도 「참여프로그램」 개발운영
 - 작지만 실천적인 질서, 청결, 이웃사랑등(Workshop 정례화)
- 찾아가는 현장 대화행정 확대로 주민참여제도 활성화
 - 도정시책등 현장 대화행정 확대 (각계각층)→ 정책결정에 반영
-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민학습 프로그램 개발
 - 외국어, 정보화, 경제관련, 외국문화 소개 등

6]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

-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추진
-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정책 능력을 제고

□ 특별법 주요내용

-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
-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 가능
-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, 임기는 2년으로 함

□ 추진 계획

< 교육훈련계획 수립체계 확립 >

-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운영
 - 문제해결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
 - 혁신교육기법 및 교육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

< 교육훈련과정의 혁신 >

- 장기 외국어 및 관리자 교육 강화
 - 외국어 정예과정에 중국·일어권 각각 20명 내외를 교육
 - 정책능력 및 국제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4~5급 중견 간부에 대한 연수 강화

○ 교육 바우처(voucher)제도 도입

- 자치역량 강화와 문제 해결형 전문 행정인 양성을 위하여 국내 민간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선택적으로 위탁 시행
- 교육과정은 지자체 CEO과정, 혁신리더쉽과정, 정책품질관리 과정 등 자치능력을 혁신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과정 중심

< 교수인력 보장 >

-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채용, 교육 전문성 확보
- 외부 우수인력을 채용함으로써 교수간의 경쟁체제 도입
- 채용 분야
 -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 및 혁신 교육기법의 도입 등을 위한 교육 전문가
 -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통상교섭 및 외자유치 등의 전문가
 - 특별자치도로서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도시·환경공학전문가

3. 신설 제도의 효율적 운영

① 주민참여제도 활성화

- 행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감독체제 강화로 책임성 확보
-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주민 자치역량 강화

특별법 주요내용

-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투표 발의요건 완화
 -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주민투표로 결정
 - 발의요건 : 유권자 총수의 1/5 ~ 1/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
 - * 타 지역의 경우 유권자 총수의 1/12
- 주민소환제도의 도입
 - 주민소환투표 대상 : 도지사, 교육감, 도의회 의원
 - 발의 : 유권자 총수의 20 ~ 30% 범위내에서 조례로 결정
 - 결정 : 유권자 총수의 1/3 이상 참여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
-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
- 기타 조례 제·개정 청구 요건 완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

추진 계획

- 관련 조례 제정('06년 상반기)
-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
 - 지역 개발사업 자율 심의권 등 읍·면·동 단위 준 자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

② 자치경찰제 시행

- 정부수립 이후 경찰역사 60년만에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디딜 수 있는 제도 마련
- 자치경찰제 시행 Road-map 준비 및 기존 국가경찰과 차별화 되는 제주형 자치경찰 서비스 발굴 시행

특별법 주요내용

- 자치경찰 기구
 - 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자치경찰단, 행정시에 자치경찰대 설치
- 자치경찰의 기능
 - 방범순찰, 교통, 기초질서유지, 시설·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 밀착 치안서비스
 - * 구체적 업무범위는 국가경찰과 사무처리 협약으로 결정
 - 환경·식품·산림·공중위생 등 17개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
 - * 자치경찰 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일반 범죄 수사권 없음 (국가경찰에 인계)

추진 계획

- 법제 정비

< 법률 개정 > : 6건

- '06년 상반기 중 개정 추진 (총리실·행정자치부)
- 대상 법률 : 경찰법, 경찰공무원법, 도로교통법, 경범죄처벌법,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,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

< 조례·규칙·고시 제정 > : '06년 상반기 중 제정 추진

- 조례 : 6건
 -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
 -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교류조례
 -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의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
 -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·직무 수행 등에 관한 조례
 - 기타 정원 조례, 행정기구설치 조례
- 규칙 :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
- 고시 : 교통관련 주차의 장소·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○ 조직·정원 설계 ('06년 3~4월)

- 조 직
 - 기본적 자치경찰 사무 외에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제주형 자치경찰 조직 설치
- 정 원 : 총 127명 (단계적으로 충원)
 - 최대 자치경찰 규모를 127명으로 하되, 관광경찰 등 특화된 신규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력 중심으로
 - 단계적인 자치경찰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정원 충원

○ 제주형 자치경찰 서비스 확정 ('06년 3~4월)

- 생활안전 서비스 확대 및 친근감 있는 서비스에 초점
 -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, 관광 활성화 지원 등
- 교통·경비·사법경찰사무 등의 업무도 종전 자치단체의 주정차 질서 유지, 위생 단속 등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

○ 자치경찰 창설 추진

1. 창설 준비단 운영

- '06년 3월중 : 도 + 경찰(파견 인력) 공동 T/F 구성 운영
- '06. 7. 1 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구성
- '06년 7월 이후 자치경찰단 중심으로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 등 후속 조치 시행

2. 자치경찰 공무원 채용

- '06년 상반기 중 국가경찰 특별 임용
 - 본격적인 자치경찰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초기 근무인력을 국가경찰에서 특별 채용
- '06년 상반기 중 신규 임용 공고
 -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 공고 → 하반기 임용시험 및 교육훈련 실시

3. 소요 예산 확보

- 중앙과 협의하여 최대한의 지원 확보

4. 사무실·장비 등의 확보

- 자치경찰의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'06년 상반기 중 자치경찰단, 자치경찰대, 현장 근무지 등을 지정
- 자체 유·무선 통신망 구축 방안 및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경찰·소방등과의 통합 통신망 구축에 대한 검토·협의 (상반기)
- '06년 하반기 소요예산 확보 후 기동장비·경찰장비 등 구입

5. 경찰 복제 및 장비 표지

- '06년 상반기 : 차별화된 복제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

③ 특별행정기관 통합 운영

- 우리도와 정책적으로 통합시너지 효과가 크고 주민 편의성 및 현지성, 경제발전의 효과와 큰 기관을 우선 이양
-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관시 안정적 재원 확보와 초기단계 통합 사무 처리의 안정성 확보 추진

특별법 주요 내용

- 도내 특별지방행정기관 48개 중 7개 기관을 이관
 - 제주지방국토관리청, 제주지방중소기업청, 제주지방해양수산청, 제주환경출장소, 제주보훈지청, 제주지방노동사무소, 노동위원회
- 중앙 부처는 인력·재정 등 이관을 지원토록 의무화

추진 계획

- 특별행정기관 이관 T/F 구성 운영 (3~5월)
 - 제주도 + 이관 기관별 1명 (파견 인력)
- 이관 계획 수립 (3월중)
 - 이관사무의 명확화 및 이체 인력규모 확정
 - 총리실, 관계부처와 협의, 최종 확정 → 정부직제 조정
 - 인계·인수 메뉴얼 작성 : 이관 문서, 재산 및 장비, 인력 등
 - * 사무실은 최대한 기존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
 - '06. 6월중 인계·인수 완료 및 통합사무 처리 시뮬레이션 실시
- 예산 이체 및 제주계정에의 반영
 - '06. 7. 1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 집행 잔액 → 제주도 이체
 - '07년 이후 예산 : 제주계정 설계시 포괄예산으로 확보

4 사회협약 제도의 시행

-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주요 정책적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추진전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
- 전국 최초로 제도화된 사회협약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 연구 검토 및 분야별 사회협약 체결 활성화

특별법 주요내용

-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의 기본 방향 결정과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분야별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
-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위임

추진 계획

- 사회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
 - '06년 상반기 중 시행
 - 주요 연구 내용
 -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구성안 마련
 - 체결된 사회협약의 실질적인 효력발생을 위한 방안 마련
 - 사회협약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성공한 외국의 우수 사례(아일랜드 등) 조사 및 연구 병행 추진
- 연구 용역 후속조치
 - 용역 결과에 따라 「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 추진
 - 조례 입법 후 사회협약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사회협약 추진
 - * (가칭)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주도민 현장 채택 →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역량 강화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

5] 공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

- 제주도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지역투자사업, 현안사업 처리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
-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호 지원 및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

특별법 주요내용

-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한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
- 국가공기업의 범위,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
추진 계획

- 시행령(안) 작성 ('06년 상반기)
 - 국가공기업의 범위 : 도내 소재 국가공기업의 기관·법인
 - 업무협조 요청사항 : 주요 지역투자사업, 지역현안사업의 처리, 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등
 -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관계부처, 도, 공기업,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계획 수립 추진 ('06년 상반기)
 - SOC 분야, 관광 분야 등
-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 협력 강화방안 연구
 - 2~3단계 제도 개선 연구에 포함 추진

⑥ 교육자치제의 선도적 실시

-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통합 및 교육감·교육의원 주민 직선제 도입과 병행하여
-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제도를 시행하고, 강화된 교육 자치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특별법 주요 내용

- 교육감·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
- 교육위원회를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일원화 : 교육의원 5,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
- 지역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합 운영
- 보조기관·소속교육기관 설치, 정원 등을 조례 위임
- 지방교육재정의 자율권 확보
 - 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률 지원 : 보통교부금 총액의 1.57%
 - 자치도의 교육재정 부담률 : 도세 총액의 3.6% → 조례 위임

추진 계획

- 교육의원·교육감 직선
 - 교육의원 : '06. 5. 31 (임기는 '06. 9. 1부터 시작)
 - 교육감 : 현 교육감 임기만료('08.2.10) 후 선거
- 현행 3개 교육청을 행정시 단위로 통합 운영 → 2개 교육청
- 교육자치 법규 정비
 -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, 조례·규칙 등 제정

4. 핵심산업 추진

① 제주도 전 지역 국제회의도시 지정

- 자치도 전체를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하여 동북아 국제회의 중심지로 육성
 - ▶ 제주 컨벤션 산업 정책을 특정 도시가 아니라 도 전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특별법 주요내용

- 「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국제회의도시 지정 대상을 “특별시, 광역시 및 시”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자치도 전체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가능

추진 계획

- 「제주도 회의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」 수립 ('06년 상반기)
 -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신청 필수서류
- 지정 신청서 작성 ('06년 상반기)
 - 회의시설 현황, 숙박·교통 등 편의시설 현황 등
- 지정 신청 ('06년 하반기)
 - 신청(도지사) →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 심의(문광부) → 지정·고시
-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확충 및 지원 추진
 - 회의산업 전담부서의 통합, 전문인력 양성
 -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·재정적 지원 등

② 제주 특성을 살린 관광제도 마련

-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·운용 등 각종 권한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주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제도 마련
- 내·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동북아의 중심 관광·휴양도시로 발전

특별법 주요내용

- 각종 법령 규정사항의 권한 위임
 - 외국인카지노 허가, 관광숙박업의 등급결정, 여행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, 변경의 기준절차 등
-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 설립
-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 권한 이양

추진 계획

- 법규 정비 추진 ('06년 상반기)
 - 대통령령 및 조례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추진
 - 관광협회, 여행사 등 관광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 특성이 극대화된 관광제도 마련·보완 추진
-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('06 상반기)
-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운영 준비
 - 문화관광부와 사전 협의 → '07년부터 별도 기금으로 운영
- 2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제 연구
 - 항공자유화, 면세 확대 등 접근 편의성 및 방문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 추진

③ 청정 1차산업 육성

- 청정안전 농·임·축산물 생산·유통 및 IT·BT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제주 1차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
- 친환경 1차산업으로 육성으로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의 실현 및 농업소득 증대

특별법 주요내용

- 농림축수산업의 진흥 및 수급 안정
 -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 및 친환경농업 육성 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,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
- 농어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권한 이양
- 직접지불·소득보조 등의 지원제도를 제주도 스스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
- 반출입 가축의 방역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등 청정축산업 진흥

추진계획

- 1차산업 新 발전모델 구축 연구검토 추진 : '06년 상반기
 - 청정 1차산업 육성 및 농어촌진흥기금 재원확보 방안
 -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기준마련 (신 발전모델 구축 방향과 연계)
 - 농어촌지역 및 농업진흥지역 조정, 제주흑우 육성방안 등
- 청정 1차산업 발전시책 시행 : '06년 하반기

4 제주 연안 및 산지의 효율적·자주적 관리

- 어장자원 및 연안 관리에 관한 권한 위임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바다 관리 기본 방향을 설정·운영
- 채석 및 토사채취의 적정 통제로 산림자원을 보호·육성하고 희귀·멸종위기 야생 동·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

특별법 주요내용

- 허가어업·기르는어업 허가권, 어장관리 등 각종 권한 이양
- 연안 및 공유수면 점·사용 및 매립 권한 이양
- 산지 보호·관리를 위한 채석 및 토사 채취 허가 권한 및 각종 기준설정 권한을 자치도로 이양

추진 계획

- 어업 및 어장관리, 공유수면관리 방향 설정 : '06년 상반기
 - 육상양식허가 기준 등을 환경 보전과 어업소득 증대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재조정 ※ 매 5년마다 어장환경 조사 실시
 - 연안정비 계획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·변경 등을 통해 종전 지역특성 미반영 사항을 조정
- 산지관리법 적용기준 및 절차 마련 : : '06년 상반기
- 2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: '06년 하반기
 - 어업조정명령 권한 이양, 낚시어선 공동영업구역 재설정 등
 - 어장 및 연안관리에 필수적인 지도·단속권한 이양 필요
 - 타 낚시어선에 대한 쿼터제 등 도내 어업인 보호기능 마련

5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

-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시스템에서 학생수요에 맞는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공교육 경쟁력 향상
- 외국의 우수 대학(원) 유치 및 국내대학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교육 중심도시 육성

특별법 주요 내용

-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초·중등 자율학교 설립·운영
- 국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허용
-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대학 뿐만 아니라 유·초·중등학교에도 외국교육기관 설립·운영

* 2004년도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 40만명, 실제 유학경비 8조원 추정

- 대학설립·운영에 관한 특례
 - 도내 대학내 외국대학교육 과정 설치허용
 -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대학설립운영
 -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 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추진 계획

- 시행령·조례 제정 ('06년 상반기)
 - 특별법 시행령 및 교육관련 조례 제정 : 교육청 주관
 - 주요 내용
 - 자율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특례가 인정되는 사항 등
- 국제고등학교 및 외국대학유치·설립 방안 마련

⑥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

-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선진의료 중심지 육성기반 조성
 - 의료발전, 규제완화, 우수의료기관 유치방안 등 사전 전문연구수행
- 규제자유지역화를 위한 과제 지속 발굴 및 단계적 추진

특별법 주요내용

- 국제적 수준의 의료 환경 조성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 의료 발전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, 매년 추진방안 시행
- 외국법인의 경우 영리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
- 특별자치도내 의료규제 완화 특례
 -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및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·알선 행위 허용
-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

추진 계획

-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연구 우선 추진 ('06년 상반기)
 - 보건의료 발전계획 초안 작성 및 특별법에서 위임한 조례 제정 기본방향 연구 → 계획 및 조례제정을 단계별로 추진
 -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연구 병행 추진
-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('06년 하반기)
- 의료분야 자치법규(조례) 제정 ('06년 하반기)
 - 의료서비스 국제화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 추진
 - *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별도 우선 입법
- 규제자유지역화 추진일정에 따라 의료규제완화의 단계별 확대 추진

7] 첨단산업 육성 추진

- IT, BT 등 첨단산업체의 투자진흥지구 지정·세제감면 폭 확대 등의 조치로 첨단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유치 강화
- 첨단과학기술단지, 투자진흥지구 등의 국공유 재산 장기 임대 및 임대료 감면, 고용보조금 등을 통한 지원 강화

특별법 주요내용

-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·관리 및 첨단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,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
- IT·BT 기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
 - 각종 조세 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

추진 계획

- 특별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·개정 ('06년 상반기)
 -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
 - ①전자·전기 및 정보, ②신물질·생명공학"을 활용하는 산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에 추가
 - *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액 : 1,000만불 → 500만불로 인하
-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
 -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 등 육성 지원
- 첨단산업 육성계획 재정비 : 생물산업 관련 도내 자원의 통합DB 구축 → 생물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IT, BT를 연계하는 융합형 사업 육성 및 지속적인 제주경제 성장 동력 확보

5. 국제자유도시 개발여건 조성

① 투자유치 기본환경 조성

-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하여 투자 유치의 기본적 여건 조성
- 토지비축제도 시행을 통하여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투자유치 환경 개선

특별법 주요내용

- 외국어 서비스 제공, 외국방송의 재송신 확대
-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,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 및 국가유공자·고령자 채용 외국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
- 토지비축을 위한 토지특별회계 설치

추진 계획

- 특별법 시행령에 외국인 경영·생활환경 개선 내용 포함
 - 외국어 서비스의 범위와 방법,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 확대
- 조례 제정 (투자유치 촉진 조례)
 -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은 수요자 실태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조례 제정 및 시설 설치 운영
 -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도 세부내용 규정 및 외국기업이 국가유공자, 고령자 채용시 고용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 마련
- 토지비축 제도 운영을 토지특별회계 운영조례 제정 및 중장기적 운영방안 연구 추진

② 토지이용 체계의 개선

- 각종 국토의 계획 및 이용·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에 대한 권한 이양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을 가능케 함
- 각종 인·허가 업무의 간소화로 사업자의 불편 해소
- 제한적 토지수용권을 부여하여 공공적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

특별법 주요내용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·관리체계의 자율성 부여 (용도지구 신설 권한 등)
- 농지 분할 권한의 자율성 확대 및 도시경관 관리제도 도입
- 개발센터 등에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
- 측량업·건설업·주택 건설업 등록 권한 등의 이양

추진 계획

- 각종 조례의 제정
 - 도시계획 및 용도지구의 특례, 도시경관 관리 분야 등 각종 권한이양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
- 광역도시 계획 수립 연구 용역
 - 용역기간 : 2005. 8. 18 ~ 2006. 12. 17(총 16개월/ 795백만원)
 - 특별법에 의한 보전지구를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와 일원하는 방안 병행 검토
- 도시경관 관리계획 수립 추진
 - 제주형 도시 디자인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: 연구 추진('06. 8월) → 시범사업의 시행 → 특별자치도 전역 확대

③ 수자원의 체계적 보전·관리

- 지하수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하수를 도민의 공동자산으로 체계적 보전·관리
- 수자원관리 및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으로 수자원 관리의 계획성과 일관성 유지 및 수자원관리 기본지침으로 활용
- 도, 시군 상수도의 통합운영으로 수자원관리기구의 일원화 및 양질의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

특별법 주요내용

-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 명시 및 수자원관리종합계획 및 농업용수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-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측망 운영 및 빗물이용 요건 강화
-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→ 지하수 원수대금을 지하수 보전·관리비용으로 전액 투자해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
- 지하수 개발·이용허가, 취수량 제한,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, 지하수영향조사기관·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·감리업 등록, 샘물개발영향조사, 온천의 골착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 이양

추진계획

-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제정 ('06년 상반기)
 - 각종 권한이양 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수자원관리 강화

- 주요 내용
 - 지하수의 개발·이용허가, 온천굴착·이용허가, 지하수 취수량 제한, 지하수 개발·이용허가 요건강화, 지하수 판매 또는 도외반출허가 등
 - 지하수위 상황에 따른 지하수의 일시적 이용중지 등 단계별 조치
 - 빗물이용시설 등의 설치확대 및 빗물이용 기준수량에 관한 사항 등
-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 ('06년 상반기)
 - 지하수 개발·이용시설기준 등 12가지 사항 규칙으로 제정
- 수자원관리 및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('06~'07년)
 - 수자원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, 수자원 개발·이용실태, 수자원 보전·관리, 수자원 기초조사, 대체 수자원 개발 등에 관한 실천계획을 포함한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
 - 농업용수 개발·이용실태, 농업용수 수요예측 및 개발·공급계획,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농업용수 종합계획 수립
- 상수도 통합운영('06 하반기)
 - 도, 시군으로 다원화된 상수도업무를 광역상수도체제로 통합
 - 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도정비계획 수립('07 하반기 완료)
- 지하수업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
 - 지하수 개발·이용허가, 원수대금 부과·징수 등 행정업무 지원
 - 지하수 관련 업무의 통계분석 지원시스템 구축

4 친환경적 생태도시 구축체계 확립

-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계획 수립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체계 확립
 - ▶ 희귀 동·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보존자원의 체계적 관리
-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내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자체 협의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 역량 제고

특별법 주요내용

- 환경기본조례의 제정,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 강화
- 사전환경성 검토·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고도자치의 기본틀 내에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개선
 -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 환경부 협의 절차 존치
 - 민간 사업자인 경우에는 환경부 협의(의견조회)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, 객관적 위치의 전문기관 검토 절차를 신설·운영

추진 계획

- 조례 제정 ('06년 상반기)
 - 환경기본조례,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,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조례,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조례 등
-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 추진
-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 전문기관 지정
 - ※ 제주형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마련 : 해외사례수집·검토

5] 환경관리제도 강화 추진

- 전국 획일적인 4대강 중심의 물관리 정책, 대도시 중심의 대기 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환경관리제도 마련
- 환경문제의 지역성을 고려하고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행정의 지방분권 추진

특별법 주요내용

-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권한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권 이양
- 소음·진동규제법에 의한 항공기 소음 방지조치요청에 관한 권한 이양
-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,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, 기타수질오염원 신고, 폐수처리업 등록 등에 관한 권한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권 이양
- 지정폐기물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조례 제정권 이양

추진 계획

- 조례 제정 ('06년 상반기)
 - 대기·수질·오수 및 폐기물관리 등 권한 이양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
 - 환경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용역 추진 ('06.3~10월)
 - 각종 환경관리 제도를 제주 특성에 부합하게 조정·강화하기 위한 연구 추진
- 용역 결과를 반영한 조례 제·개정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

⑥ 도로관리 종합체계 구축

- 국토관리청 이관 및 도 단일광역체제 개편으로 도내 모든 도로의 관리를 특별자치도가 담당
- 도 전역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조정 및 지역특성을 살린 도로표지판 마련 등 추진

특별법 주요내용

- 일반국도의 관리권을 특별자치도로 이관하고, 국도 건설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도 자치도로 이양
-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·설계권한을 이양
- 도로점용료 및 도로표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

추진 계획

- 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도로 관리체계 구축 ('06년 상반기)
 - 도로 관리청의 단일화를 계기로 도내 전 도로의 건설 및 관리 체계를 재점검 →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
- 제주형 도로표지 연구 검토 추진 ('06년 상반기)
 -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제자유도시·관광지 특성에 맞는 도로표지 설계 추진
 - ▶ 종전 : 건교부 규칙으로 도로표지 규정 → 전국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로표지 설계에 한계
- 조례 제정 ('06년 상반기)
 - 연구 결과에 따른 도로표지 변경·조정 및 권한 이양된 도로 점용료 등에 대한 조례 제정

7 옥외광고물 종합 관리방안 마련

- 도시화 서비스업 발전에 따른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
-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옥외광고물 관련계획을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로의 변신을 시도

특별법 주요내용

-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

추진 계획

-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
 - 권한이양 사항 중 즉시 반영이 가능한 내용 등 규정
- 옥외 광고물 종합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
 - 제주특성에 맞는 광고물 종류, 모양, 크기, 색깔, 설치 방법 등 개발 추진
 - 신설되는 시가지(예 시민복지타운, 혁신도시 등)에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시범 지역을 지정 추진 등
- 세부 추진일정

구 분	추진일정	추진부서
1.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조례입법	'06. 2~4월	지역정책과
2. 옥외 광고물 종합 관리방안 연구 용역 추진	'06년 하반기	지역정책과
▪ 과업계획 지시서 작성 및 발주	'06. 7~8월	
▪ 중간 보고회 및 최종보고회	'06.12월, '07.3월	
▪ 용역보고서 납품	'07. 6월	

8] 제주형 보건복지 기준 설정

- 사회복지관련 중앙부처 권한 이양에 따라 권한 이양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
-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인프라 구축으로 건강도시 실현

특별법 주요내용

-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제도 권한의 이양
⇒ 국가에서 관리하는 최소한의 기준(National minimum)이상의 복지서비스 제공
 -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, 교육(주거)급여 및 아동 안전교육, 시설 종사자 및 시설기준 등
 - 경로연금 관련 사항 및 노인복지시설의 시설·종사자·운영기준
 - 장애 관련 수급범위 및 방법, 농어촌 무상실시 의료사업 및 노인복지, 모·부자복지 관련 사항
 -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 등
- 금연구역(건강거리)의 확대, 식품접객업에 대한 위생 기준 특례 등

□ 추진 계획

- 권한 이양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('06년 상반기)
-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 사회 복지욕구 조사 ('06년 상반기) ⇒지역특성 반영
→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
- 2단계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사항발굴 추진
 - 사회복지·보건위생 분야 전면검토 지속적인 제도개선

9] 교통관리 체계 정비

- 시내·외버스 운행체계를 통합하고, 택시운행체계 및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대중 교통 체계 마련
- 자동차의 신규·변경 및 이전 등록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여 주차문제 등의 교통환경 개선

특별법 주요내용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권한 이양 및 제도개선
 - 면허, 면허기준, 운임·요금 신고, 운송약관, 양도·양수, 대여약관,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
- 자동차의 신규·변경 및 이전 등록시 차고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
 - 대상자동차의 종류 및 시행시기, 차고지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자체 실정에 맞게 도조례로 규정

추진 계획

-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('06년 상반기)
 - 운수사업 면허 기준 등을 지역 실정에 부합하게 조정 추진
 - *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기준 강화 등
 - 광역버스 운행체계 구축(교통카드 호환체계 구축)
-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('06년 상반기)

6. 2단계 추진체계 구축

① 규제자유지역화 추진

-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아,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 운용
- 네거티브 시스템(Negative System)에 입각하여 필수규제를 제외한 규제 전면 정비

특별법 주요내용

- 제주도와 각 부처는 특별자치도에 존치할 필요가 있는 '필수 규제'를 선정하여 법 시행일('06. 7월) 이후 6월 이내에 제주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
- 지원위원회는 제출된 필수규제(안)를 검토·심의하여 필수규제를 확정하여 별도 법안 마련
- 지원위원회는 필수규제를 매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정

추진계획

- 중앙권한 이양 과제 발굴 : '06. 하반기
 -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, 용역 등 추진
 - 범도민적 의견수렴 및 국내외 주요 투자자 수요 조사를 통해 권한 이양 및 특례 제도 마련
 - 규제 검토 추진
 - 검토 대상 : 3,900여개 법령 및 7,900여개 규제사항 분석
 - 필수규제 검토 및 지원위원회 제출 : '06. 하반기
- 규제 자유화를 위한 법률 제·개정 추진

② 2단계 제도개선 등 연구(용역) 추진

- 특별자치도의 단계적 완성을 위하여 2단계 추진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중앙 설득논리 개발
- 권한이양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차별화된 시행 방안을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마련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조례 제정 및 추진방안 마련

연구 과제의 선정

1. 2단계 제도개선 과제('06 하반기, 특별자치도 기획단)

- 규제자유지역 도입 방안
 - 각종 규제 및 권한을 ①필수규제, ②비필수 규제, ③권한이양 사항 등으로 구분
- 항공자유화 도입 방안
 - 國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면서 외국 직항로 확충 및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
- 면세지역화 도입 방안
 - 국세의 지방이양 및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방안 병행 추진

2. 차별화된 조례제정 및 신설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 과제('06 하반기)

- 국제적 교육 중심지화 도입 방안 추진
 - 외국교육기관 유치 기본방향 설정, 2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병행 연구
- 보건의료 발전방안 연구용역

- 도민 자치역량 강화 방안
-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 검토
 - 자치경찰 복제·CI 제작, 차별화된 자치경찰제 운영 확대 방안 등
- 사회협약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
- 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대한 협약 방안
- 토지비축 활성화 및 비축자금 확보방안
- 전통주거문화 발굴 및 개선 방안 연구
- 지역실정에 맞는 옥외 광고물 관리 운영 방안
-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강화 전략 방안
- 금융산업 육성방안
- 차별화된 제 주형 조직·인력 관리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
- 1차산업 新 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검토
- ※ 기타 연구·검토과제 발굴 추진

연구 추진계획

- 연구과제 확정 및 과업지시서 작성 : '06. 3~4월 중
- 연구추진 : '06. 5월 ~ '06 하반기
- 연구결과 활용
 - 특별법에 반영된 과제
 - 시행방안 마련 및 관련 조례 등 제정 : '06년 하반기
 - 2단계 등 향후 추진 과제
 - 도입방안 마련, 중앙 절충 및 특별법에 반영

7. 특별법 홍보 및 도민공감대 형성

- 특별법의 법 취지를 올바르게 알리고 자치도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로 전문성·국제 경쟁력 향상
- 끊임없는 정보와 지식제공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차별화된 자치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 부여

추진방침

- 특별법 내용 및 취지 홍보(연중)
- 찾아가는 홍보활동실시(읍·면·동 및 유관기관·단체)
- 정보화마을확대·1일 자치도 소식등 전문사이트 개발
- 전문가를 통한 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로 체감홍보 실천

추진계획

- 언론 대담을 통한 홍보
- 외국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수립
→ 가칭 「제주아일랜드 홍보단」 구성
- 주민(단체) 주도형 토론회 정착지원
- 자치도 출범이후 정례적으로 추진일정 소개
-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창구 다양화
→ 전화, 엽서, 관광지, 공항(부두)연륙교통수단을 이용한 홍보
- ※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대폭강화 → 정보의 산실로 정착